

17. '97년도 3/4분기중 정상지가 상승율

건설교통부고시제 1997-354호 1997. 11. 6.

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
5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
'97년도 3/4분기중 정상지가상승율을 다음과
같이 고시합니다.

• '97년도 3/4분기중 적용할 정상지가상승
율 : 2.4%

주택회보